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7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이정문 · 손명수
이주희 · 이연희 · 박정현
민홍철 · 최혁진 · 복기왕
이재관 · 강준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.

이에 「국가재정법」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사용하거나 출연한”을 “사용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2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사용하거나 출연한”을 “사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2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사용 또는 출연은”을 “사용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2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항, 제4항 및 제5항”으로, “사용 또는 출연은”을 “사용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제2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항, 제4항 및 제5항”으로, “사용하거나 출연한”을 “사용한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· ② (생 략)	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은 100분의 30 이상을 「공적 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 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 연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<u>사용하거나 출연한</u> 금액 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 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 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.	④ 제2항----- --- <u>사용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<u>사용하거나 출연한</u>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할 수 있다.	⑤ 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 <u>사용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<u>사용</u>	⑥ 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 <u>사용은</u> -----

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,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<u>사용 또는 출연은</u>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국가회계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.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<u>사용하거나 출연한</u>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. ⑨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⑦ 제2항, 제4항 및 제5항-----<u>사용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⑧ -----제2항, 제4항 및 제5항-----<u>사용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